

## ‘25년 식품접객업소(개식용)간판 등 전·폐업 지원사업 공고

오산시에서는 「개식용종식법」 및 「개식용종식 기본계획」에 따른 전·폐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「’25년 식품접객업소(개식용) 간판 등 전·폐업 지원사업」 간판 물품 교체 비용등의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. 6. 2.

오 산 시



### 1. 사업개요

- 25년 예산액 : 2,500천원(국비 50% 시비50%)
- 간판 등 지원금액 : 1개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  
※ 초과 비용 발생 시 업주 부담
- 지원내용
  - 간판, 메뉴판 등의 물품 교체 비용 지원
  -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
  -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2. 자격요건

- 신청 자격요건
    - 법 제10조(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)에 따라 신고 및 '24.8.5 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
  - 전업 지원
- ①(시설·물품 제작·설치) 전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영업자가 간판, 메뉴판 등 제작·설치
  - ②(비용 지급 신청) 영업자가 간판, 메뉴판 등 제작·설치 증빙자료, 비용 지급 서류 등을 시에 제출
  - ③(비용 지급) 시는 영업자 제출 자료,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간판,

메뉴판 등 제작·설치 사실 확인 및 비용 지급

- 증빙 사진 : 간판, 메뉴판, 광고물 등 신규 제작·설치된 사진\*  
前 간판, 메뉴판 등 사진도 미리 확보하여 제출
- 비용 지출 증빙 자료 : 세금계산서,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
\* 간이영수증, 현금 결제 등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불가
- 비용 지급받기 위한 자료 : 통장 사본\*(계좌번호, 예금주 확인 가능),  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한 자료 등  
\*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上 당사자 명의 통장

※ 전업 지원 제외 대상

- 관련 규정 : 영 제6조제2항, 제9조제2항
  - 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함)이 인정하는 경우
  - 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\*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경우
    - \* ① 개사육농장, ②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·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기 위한 시설, ③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·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
  -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2024년 8월 5일을 경과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
  - 개식용 유통상인·식품접객업의 영업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자\*
    - \* 원료구입내역·매출증빙자료 또는 메뉴판 등 개 또는 개고기를 이용한 영업 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전·폐업 지원 불가
    - ※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관련 가이드라인(농식품부, '24.4월) 참고
  - 「토지보상법」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(중복 보상 방지)- 신청서 접수 시 지정증 유효기간 만료 4개월 미만인 경우



## 사 례

### <전·폐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>

- 2024.2.6. 전에 개식용 유통상인, 식품접객업 영업을 이미 폐업한 경우
- 2024.2.6. 전부터 개식용 유통상인,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 오고 있으나, 2023.2.7. 이전부터 2024.2.6.까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개 또는 개고기를 취급하지 않은 경우
- 2024.2.6. 전부터 영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원료구입내역·매출증빙자료·거래장부·가격표 또는 메뉴판 등)가 전혀 없는 경우

## □ 폐업 지원

- ① 폐업(예정)영업자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센터 방문 등을 통해 문의

- ② 지원 대상 :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 +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예정자 (폐업 후 이미 재창업을 한 경우 지원 불가)

※ 『개식용종식법』에 따른 폐업지원 신청 절차 통해 영업자의 폐업 이행여부 확인

- ③ 지원 분야

- 원스톱 폐업 지원 : 사업정리 컨설팅, 점포철거비, 법률자문

채무조정 지원

- 특화취업지원 : 취업교육, 전직 장려수당, 국민취업지원제도

연계, 취업 성공수당

- 재기사업화(재창업) 지원 : 재기진단, 사전교육, 재창업 사업화

대상 선정, 재창업 사업화 지원

### 3. 신청기간 및 방법 등

○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5. 12. 1.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)

○ 신청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(☎ 031-8036-6822)

- 방 문 : 오산시청 식품위생과(위생정책팀)

※ 방문접수 가능시간 : 평일 09:00~17:00(주말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

- 우 편 :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

※ 우편접수 시 도착일 기준, **송달 여부 확인 전화 필수**

#### 제 출 서 류

- ①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·전업 지원 신청서 1부(붙임1)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(붙임2)
- ③ 개식용 영업자 전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(붙임3)
- ④ 비용지급 신청 증빙자료(카드 결제내역, 사진, 세금계산서 등) 1부
- ⑤ 통장 사본

### 4. 선정방법

○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

### 5. 청구금액 지급

○ 청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지급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

### 6. 지원절차



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4호서식]

개식용 식품접객업자 [ ]폐업 [ ]전업 지원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내용	사업장명(상호)	운영기간(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) 년 월 일 ~ 년 월 일	
	사업자등록번호	영업신고번호	
	전화번호	폐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	사업장 소재지	전업 예정일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 년 월 일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[ ]폐업 [ ]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오산시장

귀하

처리절차

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



